

#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업무 관련 FAQ

## 1.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가 무어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3조 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내용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(이하 “관리원”이라 한다)에 신고하여야 하며,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리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\* 변경 신고 사항 : 사업자 정보(회사명, 대표자, 주소), 파생모델, 부품 변경 등

-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면 되고,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.

## 2.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전기용품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을 따르며 동법 운용요령 별표 1, 별표 2, 별표 3에서 대상 세부 품목명 확인 가능합니다.

## 3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이 시행되는 2017년 1월 28일 이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이행한 전기용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?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 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은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. 다만,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변경신고를 진행 하여야 하며, 동법 시행 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은 통관 또는 출고 전에 관리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## 4. 수입제품의 통관 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가 필요한가요?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하며, 통관 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(별지 제17호서식)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(별지 제18호서식)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
\* 통관된 후에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동법 제51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**5.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**

-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(별지 제17호서식)가 필요합니다.
- 공급자적합성확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.

**6.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시 제품명을 법정용어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, 해당 제품이 법정 제품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?**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과 유사한 기기로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경우라면 ‘그 밖에 가목부터 □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(○○)’의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\* □ :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1~3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품목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

○○ : 유사한 기기의 법적 세부 품목명

ex) 신고하고자 하는 기기가 ‘비디오카메라’와 유사한 기기로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이라면 제품명작성은 [그 밖에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(비디오카메라)]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
\*\*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명 확인 방법 : 제품안전정보센터(safetykorea.kr) > 안전정책 > 제품안전 대상품목 > 전기용품 > 공급자적합성확인

**7.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(변경)업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**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43조 제1항 12호에 따라 신고와 변경 신고 각각 모델당 11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(부가세 포함)

**8. 수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**

- 입금 계좌 : 우리은행 1005-703-566500 (한국제품안전관리원)  
접수번호당 11,000원(부가세 포함)

\* 세금계산서 청구, 카드결제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희망하시는 경우 supply@kips.kr로 요청 메일 또는 1670-4920 (내선5. 공급자적합성신고 문의)로 연락 주시길 안내드립니다.

**9. 수수료는 미리입금해도 되나요?**

- 수수료 입금은 처리상태가 ‘입금확인중’일 때 요청드립니다.
- \* 접수된 신고내역은 순서대로 검토되며, 검토 후 상태가 ‘입금확인중’으로 변경됩니다.

**10.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(변경)업무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**

-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(변경) 업무의 처리 기간은 각각 7일입니다.(주말, 공휴일 제외)

**11. 과거 별지서류를 보유하고 있는데 변경신청시 별지를 수정해서 제출 가능한가요?**

- 과거 변경신청시 별지 양식 서류가 필요서류였으나 현재는 별지양식은 제출 서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별지는 제출 생략해 주시고 별지 수정 서류는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

**12. 적합성 신고하고 나서 수정을 하고 싶는데 상태 값이 처리중으로 떠있고 수정이 안됩니다.**

- 처리중은 서류검토 대기 상태로 직접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 중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원으로 수정 가능 상태로의 변경을 요청 시 상태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**13. 적용안전기준은 어떻게 확인하고 작성하면 되나요?**

- 적용안전기준은 제품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성적서를 확인하시고 작성 바랍니다.

\*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[별표 25]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(제63조 관련) 참고

**14. 위임서류가 무엇인가요?**

- 위임서류는 대행업체가 신청인일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일반적인 신고의 경우는 생략하시고 공급자적합성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**15. 파생모델명 적는 칸이 모자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**

- 온라인 신고내역 하단 부 별지추가를 체크하시면 별지 작성칸이 활성화됩니다. 해당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
(별지 추가 사유 : 파생모델 기입)

**16. 가입을 했는데 승인이 필요하다고 뜹니다. 바로 적합성신고를 할 수 없나요?**

- 사이트는 관리자의 회원가입 승인 이후 이용 가능하며, 승인까지는 근무일 기준 최대 1일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.

\* 빠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[supply@kips.kr](mailto:supply@kips.kr)로 요청 메일 또는 1670-4920 (내선5. 공급자적합성신고 문의)로 연락 주시길 안내드립니다.

**17. 기존의 회원인데 사이트가 바뀌고 나서 로그인 안 됩니다.**

- 공급자적합성온라인신고 사이트가 리뉴얼(18년 07월)되었습니다. 때문에 기존 회원 가입한 내역이 있어도 새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. 가입절차 중 기존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가입 진행해 주시면 이용 가능합니다.

**18. 회원가입 정보를 전부 입력 했는데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.**

- 회원가입 중간 위치에 있는 [기존회원전환버튼]을 누르는 것을 생략한 것은 아닌지 확인바랍니다.

**19.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기본모델 정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.**

- 발급된 자료는 변경된 내용 확인이 가능한 별지 제19호서식인 변경신고 증명서입니다. 기존 발급 받으신 별지 제18호서식 뒤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길 안내드립니다.

**20.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나요?**

-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표시사항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 9 및 안전기준에 따라 표기하며, 관리원에서 발급하는 공급자적합성신고 발급번호의 경우 표시의무는 없습니다.